

1.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개정 (해양수산부령 제314호, 2005. 10. 26)
 - 총톤수 5톤이상 어선(현존 연안어선 제외)에 대하여 SSB무선전화화에 VHF/DSC를 설치토록 함. 다만 현존 어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치 유예
 - 낚시어선 : 2007년 1월 1일까지
 - 근해어선 : 24미터 이상 2008년 7월 1일까지, 24미터 미만 2009년 7월 1일까지
 - 평수구역 항행 선박에 대하여 VHF 무선전화를 대신하여 VHF/DSC 무선설비를 설치토록 함. 다만, 현존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치 유예
 - 여객선 2007년 7월 1일까지, 여객선외의 선박 2009년 7월 1일까지
 - 연해주역 항행선박은 SSB 무선설비의 설치 면제
 - 내수면 항행선박 및 해수면 항행선박으로서 선령 15년 미만의 선박에 대해 수중검사제도 도입(제1종중간검사에 한함)
2. 「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」 개정 (해양수산부령 제290호, 2005. 3. 12)
 - 중급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(DWT) 600톤 이상의 국내항해 유조선에 대한 상태평가검사(CAS : Condition Assessment Scheme)제도 도입
3. 상태평가검사기준 제정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-11호, 2005. 4. 4)
 - 단일선체유조선의 계속운항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상태평가 검사절차를 규정
4. 「위험물 운송 및 저장규칙」 개정 (해양수산부령 제317호, 2005. 12. 6)
 - 여객선에 탱크 자동차 및 탱크로리로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확대 - 등유 및 경유 운송불가 → 등유 및 경유 운송가능
5.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등기준 개정 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-31호, 2005. 6. 17)
 - 선박의 난방 또는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LPG Gas용기 보관 및 가스배관 기준을 마련
6.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 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-49호, 2005. 7. 21)
 - 산적화물선의 선원안전을 위하여 선미 자유낙하식 구명정 비치 의무화
 - 제조일로부터 5년 미만의 구명뗏목의 정비시기 완화(매년 정비 → 5년기간중 2회)
7. 강선의선체구조기준 개정 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-51호, 2005. 7. 27)
 - 창구덮개의 강도 기준 강화
 - 연해주역 이하 항행선박에 대해 부재치수 경감 및 적하지침서 비치면제
8. 부선의구조및설비등기준 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-52호, 2005. 7. 27)
 - 예선에 예인삭이 비치된 경우 부선은 예인삭 비치 면제
 - 부선 예인삭 강도 계산시 사용되는 예인속력 및 풍속 기준 설정
9. 카훼리선박의구조및설비등에관한기준 개정 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5-52호, 2005. 10. 5)
 - 차량을 적재하는 갑판의 강도를 평가하는 산식 마련